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문 정비를 통한 법률 해석 혼란 방지 등 >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167, 2201169,
2201171, 2201175, 2201177, 2201180, 2201181, 2201231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II. 검토의견: 조문 정비를 통한 법률 해석 혼란 방지 등	10
1. 신규 등록신청자가 ‘법 제외 대상자’에 포함됨을 명시	23
2. 다른 보훈 관계법률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28
※ 참고자료	33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4. 6. 28.
- 3) 회부일 : 2024. 7.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5·18민주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95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95조제3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95조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5항 신설 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4. 6. 28.
- 3) 회부일 : 2024. 7.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28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28조제3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28조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4. 6. 28.
- 3) 회부일 : 2024. 7.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 79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79조제3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79조

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5항 신설 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4. 6. 28.
- 3) 회부일 : 2024. 7.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39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39조제3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39조 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신설 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4. 6. 28.
- 3) 회부일 : 2024. 7.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보훈보상대상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법 제72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72조제3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72조 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5항 신설 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4. 6. 28.
- 3) 회부일 : 2024. 7.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률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39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39조제2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39조 제2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4. 6. 28.
- 3) 회부일 : 2024. 7.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법 제80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80조제3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80조 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5항 신설 등).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4. 7. 1.
- 3) 회부일 : 2024. 7.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25조 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25조제2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25조 제2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등).

II. 검토의견 : 조문 정비를 통한 법률 해석 혼란 방지 등

□ 8건의 개정안¹⁾은 개별 보훈 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 적용 배제자의 등록절차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등으로 법 적용에서 제외된 사람이 특정 보훈 법률에 따라 법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다른 보훈 법률의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9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생략) 1. ~ 5. (생략) ② (생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u>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u>	제9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제외된 사람(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다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④ (생략)

<신설>

⑤ (생략)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투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로 다른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투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보훈관계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현행 제⑤항과 동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생 략) ② (생 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누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제외된 사람(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누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u> ----- ----- -----. -----.
1. 2. (생 략) ④ (생 략) <u><신 설></u>	1.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로 다른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법의 적용 대상자로

⑤ · ⑥ (생략)	<u>결정한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뇌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보훈관계법률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u> ⑥ · ⑦(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생략) 1. ~ 5. (생략) ② (생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뇌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외된 사람(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제6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이 법의 적용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④ (생략)

<신설>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제6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뇌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

-----.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로 다른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뇌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보훈관계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

⑤ (생 략)	<u>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의 배제) ① (생 략) 1. ~ 7. (생 략) ② (생 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1 호·제4호·제5호 또는 제7호 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서 <u>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u> <u>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u> <u>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6</u> <u>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u> <u>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u> <u>보상을 할 수 있다.</u>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의 배제)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제외된 사람(같은 항 각 호</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제6</u> <u>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지 아</u> <u>니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이</u> <u>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u> <u>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다</u> <u>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게 되어 제6조에 따라 등록</u> <u>을 신청한 경우 그 뉘우친 정</u> <u>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u> <u>우에만</u> ----- -----. -----
1. ~ 3. (생 략) ④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생 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로 다른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39조제4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뇌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보훈관계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현행 제⑤항과 동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생 략)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제7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외된 사람(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만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 2. (생략)

④ (생략)

<신설>

나에 해당하나 제4조에 따라 등
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국가보
훈부장관이 이 법의 적용대상
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되어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만 -----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로 다른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72조제4항
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
결을 생략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
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보훈관계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이후, 금고 이
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⑤ (생략)	<u>대상자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u> <u>⑥ (현행 제5항과 같음)</u>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5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없다. 1. ~ 2. (생략) ③ (생략) <신설>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외된 사람(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 -----. -----.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④ (생 략)	<u>범죄로 다른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39조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뇌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보훈관계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생 략)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외된 사람(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제6조에 따라

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없다.

1. ~ 3. (생략)

④ (생략)

<신설>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제6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로 다른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보훈관계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⑤ (생략)	<u>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생략) 1. ~ 4.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u>제외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u>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② ----- ----- - <u>제외된 사람(제4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4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누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u>

<신 설> ③ (생 략)	인정되는 경우에만 ----- -----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로 다른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 결을 생략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 만, 뇌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보훈관계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이후, 금고 이 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현행 제③항과 동일)
-----------------------------------	--

□ 각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에 대한 등록절차를 정
비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국가유공자
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1. 신규 등록신청자가 ‘법 제외 대상자’에 포함됨을 명시

□ 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제7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제사유²⁾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모든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³⁾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제79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배제사유별 2년 또는 3년)이 경과하면 그 뒤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신청을 받

2) [참고] 법 적용 배제사유(p.32).

3) 「국가유공자법」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 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⁴⁾

- 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법의 적용을 받을 사람이 형 집행 종료일 또는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이하 “신규 등록신청자” 또는 “신규 등록신청”이라 함), 별도의 결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누우친 정도가 현저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법 적용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표 1]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신규 등록신청 절차

구분	< 등록 불가 기간 > (법 적용 불가)	<심사 후 등록 가능 기간> (법 적용 대상 여부 결정)
절차	배제사유 발생 (형 선고 확정) → 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 ↔ 3년 ↔	신규 등록신청 → 보훈심사 위원회 심의·의결 → 법 적용 대상자 해당·비해당 결정
비고 (실무)	← 등록신청 시 법 적용 비해당 결정 통지 →	← 등록신청 시 누우침 여부 심사 →

- 4) 「국가유공자법」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누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삭제 <2009. 2. 6.>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5)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의미함.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히 등록이 금지되고, 제5호에 따라 법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등록 전에는 제5호 사유에 해당할 수 없게 됨.

- 그런데 현행법 제79조제3항은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규 등록신청자의 신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 적용 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야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법 적용 배제사유가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사전에 ‘법 적용 제외’를 하지 않은 사람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법 제79조제1항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이 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도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신규 등록신청이 있기 전까지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배제 사유의 존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신규 등록신청이 있기 전 ‘법 적용 제외 결정’을 할 수 없음.
- 그런데, 법 제79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적용 배제 사유였던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 종료일 등부터 3년이 경과하면 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였던 자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규 등록신청자가 해당 기간을 경과한 후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 적용 제외 결정’이 없어, 같은 항의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그 해석이 문제됨.

- 만일, 신규 등록신청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 적용 제외 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신규 등록신청자는 신규 등록신청 이후 ‘법 적용 배제 결정’을 받고, 다시 등록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이에, 현행 법해석 및 실무는, 신규 등록신청자를 제79조제3항에 따른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법제처는, 신규 등록신청자는 “적용받을 국가유공자”로서 제79조 제1항에 따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던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같은 조 제3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 것도 명백하다고 보고 있음.⁶⁾
- 법 제79조 제3항은 과거 신규 등록신청자에게도 별도의 법 적용 배제 절차 없이 보훈심사위원회가 바로 누우친 정도를 심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2016. 5. 29.)된 바 있고, 위 개정 당시 ‘제외된 사람’의 문언과 관련된 개정은 없었으나, 그 개정 이유에서 신규 등록신청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음.⁷⁾

6)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21-0199), 다만 법제처는 동 해석 사례에서 신규 등록절차에 별도의 결정이나 처분이 필요하지 않음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7) 「국가유공자법」(법률 제14255호, 2016. 5. 29., 일부개정) 개정이유

- (전략)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표 2]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 개정(2016. 5. 29.)⁸⁾

구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 (2016. 5. 29. 법률 제14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 ⁹⁾ (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u>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뇌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u> 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u>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뇌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u> 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제도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신규 등록 신청자가 법 제79조제3항제1호에 따른 3년의 기간 경과 후 신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외 결정없이 뇌우침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여 등록 결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석을 통하여 운영하였던 근거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따른 경우 무용한 행정 절차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법 적용에서 제외된 사람의 신규 등록절차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8) 구 「국가유공자법」 상 “다시”라는 문구는,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 배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음. 따라서 그러한 선행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음.

9) 동 조항은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개정한 것(2023.3.4. 개정) 외에 현행과 내용은 동일함.

2. 다른 보훈 관계법률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 현행법은 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가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신청자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 적용 대상자로 인정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⁰⁾

○ 그런데, 현행 보훈 관계법률은 해당 법 적용 대상의 배제사유 및 법 적용 제외 대상자에 대한 등록절차를 각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고, 각 법률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사람이 특정 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었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이에 대하여, 법 적용이 배제된 사람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10) 「국가유공자법」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삭제 <2009. 2. 6.>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거쳐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당초 법 적용이 배제되었던 사유의 기초가 되는 범죄행위가 동일하다면,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타 법률에서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다른 보훈 관계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는데 있어,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표 3] 보훈심사위원회 법적용 배제 및 재등록 심사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현황	심사 결과			계류 (차년도 이월)
		계	해당	비해당	
2020년	118	77	21	56	41
2021년	349	273	79	194	76
2022년	206	180	40	140	26
2023년	112	97	31	66	15
2024년 (8월까지)	111	82	27	55	29

자료: 보훈심사위원회 홈페이지 관련 현황 재가공

□ 이에, 개정안은 법 적용 배제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특정 보훈 관계법률에서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 이후 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보훈 관계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려 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일관성 유지 측면과 절차의 반복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표 4] 현행 제도와 개정안에 따른 제도 비교(예시)

< 현행 >		< 개정안 >	
「甲법」	「乙법」	「甲법」	「乙법」
1. 유공자 등록		좌동	
	2. 유공자 등록		
3. A범죄로 인한 형 선고 확정			
4. 법 적용 배제 결정			
5. 형 집행 종료 후 3년 경과			
6. 등록 신청			
7. 보훈심사위 의결 (뇌우침 요건 충족)			
8. 법 적용 대상자 해당 결정			
	9. 등록신청		9. 등록신청
	10.보훈심사위 의결 (생략 불가)		(생략 가능)
	11. 법 적용 대상자 해당 결정		10. 법 적용 대상자 해당 결정

□ 다만, 개정안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없는 경우를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만 정하고 있는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요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경우 외 다른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보훈심사위원회는 ‘뇌우침 정도가 현저한지 여부’를 당초 법 적용을 배제하게 되었던 원인이 된 범죄행위의 죄질·직무와의 관련성, 재범 여부, 형 집행 종료 후 경과 기간, 봉사·기부활동 등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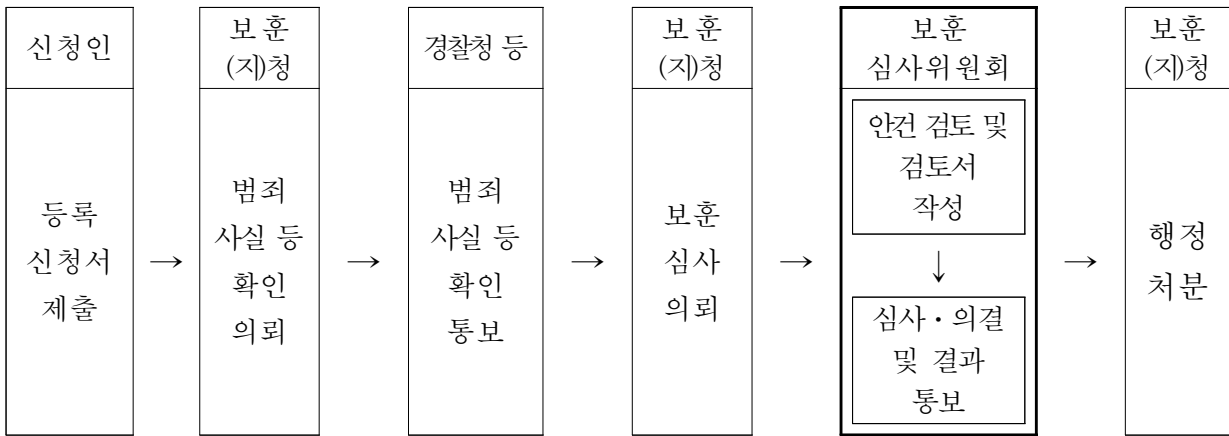
공헌 실적(기간, 지속성 등), 기타 신청자가 처한 환경(경제적 어려움, 건강 상태, 자숙 태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고 있음.¹¹⁾

- 즉, 대상자가 범죄 이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심사하고 있는데,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외 다른 사정 고려 없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면, 타 법의 대상자 결정 시 심사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예우함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희생과 부담이 전제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국가유공자에게 요구되는 품위와 도덕성의 기준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특정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경과한 기간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상자 결정 이전 발생하였으나 당초 심사에 고려되지 못하였던 사실’이나 ‘결정 이후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같은 사정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없는 사유인 ‘대상자 결정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생략된다면 이러한 사정이 추후 대상자 결정 여부에 반영되지 못할 수 있음.

11)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 여부가 문제된 개별 사건들을 참고하여 종합하였음.

○ 즉, 같은 범죄로 다른 보훈관계법률에서 법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그 결정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의뢰 여부가 판단될 우려가 있음.

[표 5]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절차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 본문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하는 경우는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고, 이외에 다른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2

참 고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법 적용 배제사유¹²⁾

구분	대상 범죄(행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국가보안법(제1호)	
		법 위반 행위
	「형법」(제2호)	
	제87조	내란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제89조	제87조·제88조의 미수범
	제90조	제87조·제88조의 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2조	외환유치
	제93조	여적
	제94조	모병여적
	제95조	시설제공이적
	제96조	시설파괴이적
	제97조	물건제공이적
	제98조	간첩
	제99조	일반이적
	제100조	제92조~제99조의 미수범
	제101조	제92조~제99조의 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된 사람	「형법」(제3호 가목)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4조	제250조·제252조·제253조의 미수범
	제264조	상습 상해·폭행 등
	제279조	상습체포·감금 등, 각 죄의 미수범
	제285조	상습 협박 및 미수범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	인신매매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제294조	제287조~제292조의 미수범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12) 「국가유공자법」을 기준으로 재가공하였음.

구분	대상 범죄(행위)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된 사람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	제297조~제299조의 미수범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제332조	상습으로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의 죄를 범한자
	제333조	강도
	제334조	특수강도
	제335조	준강도
	제336조	인질강도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제339조	강도강간
	제341조	상습 강도 등
	제342조	제333조~제339조, 제341조의 미수범
	제351조	상습 사기·특수공갈
	제363조	상습 장물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호 나목)	
	제2조	상습 상해·폭행·협박··강요주거침입·공갈·재물손괴 등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제6조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항의 미수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호 다목)	
	제5조	국고 등 손실
	제5조의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4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호 라목)	
	제3조	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배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죄 등의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호 마목)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	특수강간 등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구분	대상 범죄(행위)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된 사람	제15조	제3조~제9조의 미수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호 바목)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 행위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	알선영업 행위 등
	제16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행위
	「군사기밀보호법」 (제3호 사목)	
	제11조	군사기밀 탐지·수집
	제11조의2	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제12조	군사기밀 누설
	제13조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제13조의2	군사기밀 불법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제15조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전기통신사업법」 (제3호 아목)	
	제95조의2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위한 필요조치, 기술적·관리조치 등 의무 위반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된 사람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재직기간 중 직무관련 뇌물 등 범죄(제4호)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	알선수뢰
	제133조	뇌물공여 등
	제355조	횡령, 배임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	배임수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제3조	알선수재
기타	상습적 품위손상행위(제5호 및 시행령 제98조)	
	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 하는 행위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